강원도관광재단 공고 제2022-30호

2022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원 안심관광 'G-Safe Travels' 지원 계획 공고

(재)강원도관광재단에서는 국제관광 재개 연계 외국인관광객 유치회복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2022 강원 안심관광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재)강원도관광재단

1.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2022 강원 안심관광 G-Safe Travels 지원계획 공고

나. **사업목적** : 국제관광 재개 연계 외국인관광객 유치회복 및 인바운드 여행업체 활성화

나. **대 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인바운드) 등록 업체
- 외국인관광객 유치 여행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여행사

다.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2. 12. 31.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가능, 4월 실적 소급 적용 가능

라. **지원근거** :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마. **지원사항(요약)**

- 인바운드여행사 대상 대한결핵협회 검사에 한해 PCR 또는 신속항원(RAT) 검사비 지원

※ 대한결핵협회 - 여행사 간 코로나 검체 검사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완료 필수

- 추진근거 : 강원도-한국관광공사-대한결핵협회-한국여행업협회 업무협약 체결('21.11월)

※ 대한결핵협회 계약 관련 세부사항 [붙임 1, 2 문서] 참조

2. 지원사항

□ 강원 안심관광 코로나 검사비 및 방역물품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등록 업체
- 대한결핵협회와 코로나 검체검사 위탁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완료한 업체
- 인천공항 및 양양공항 입국 외국인 단체(도내 2박이상, 4인이상)

○ 지원사항

지원기준	지원항목	세부사항
도내 2박이상 최소 4인이상 외국인단체	① PCR 검사(70,000원/1회) ② 신속항원(35,000원/1회) 중 택 1	- 검사비 1인 1회 및 영문확인서 발급 - 대한결핵협회 - 신청여행사 간 사전검사계약 완료 필수 - 검체장소 : 총7개소
도내 1박이상 최소 4인이상 외국인단체	패스트트랙 이용가능	- 검사비 지원 없음, 지원 절차만 이용 (영문확인서 발급 및 할인금액적용) - 대한결핵협회 사전 지원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기 타 추가지원	방역물품 지원(손소독제, 마스크 키트 등)	- 방한 입국일 최소 5일전 신청 (사전발송 등) - 방역키트 재고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검사장소

구분	지역	주소	연락처	비고
도 내 보건소	춘천	춘천시 중앙로 135	033-250-3550	
	강릉	강릉시 남부로 17번길 38	033-660-2018	
	속초	속초시 수복로 36	033-631-4000	
	평창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1	033-332-4000	보건의료원
	정선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033-560-2116	
대한 결핵협회	서울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6길 57	02-2085-0066	
	강원도 (춘천)	춘천시 중앙로 9	033-257-2056	

※ 강원도 보건소의 경우 향후 확대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사전지원 신청 : 사업개시 최소 5일전 까지 서류 제출

※ 재정지원 및 방역물품 지원사항 **사전 협의 필수**

※ 모객 및 행사 관련 서류(명단, 일정 등) 여행사 자체 서식 활용

- 지원금 신청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증빙 서류 제출

○ 신청방법

- 사전지원 신청 : 온라인 이메일 접수
- 지원금 신청
  ① 증빙서류 온라인 이메일 접수
  ② 여행사 ↔ 재단 담당자 간 서류 심의 및 보완
  ③ 증빙서류 원본 우편 접수

○ 신 청 처

- 강원도관광재단 해외마케팅팀 (033-269-8940 / shlim@gwto.or.kr)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89(퇴계동), 3층 우)24455

○ 지원절차 ※ 여행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가능

① 사전 지원 신청	→	② 사업 승인	→	③ 사업 시행
사업개시 5~14일전까지 (수시접수)		사업개시 3~7일전까지		코로나 검사 및 대한결핵협회 청구
여행사 → 재단, 대한결핵협회		재단, 대한결핵협회 → 여행사		여행사 ↔ 대한결핵협회

↓

⑥ 지원금 지급	←	⑤ 지원금 심의	←	④ 지원금 신청
당월 말일에 지급 ※ 증빙서류 원본 우편접수		매달 15일까지 접수건에 대해 통합 심의 및 통보		대한결핵협회 검사 비용 지불 후 15일 이내 ※ 증빙서류 사본 제출
여행사 ↔ 재단		재단 → 여행사		여행사 → 재단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사전 지원 신청		○ 강원 안심관광 단체 지원 신청서 ※ 담당자 요청 시 행사 제반사항 관련 서류 추가 요청 가능	**서식 1**
		○ 단체관광 일정표	자체양식
		○ 단체관광 참석자 명단 ※ 성명, 성별, 국적, 연락처(이메일, 번호 등) 필수 포함	자체양식
공통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정산 신청시 제출
		○ 관광사업등록증 1부	
		○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신청	**코로나 검사비 지원**	○ 청구서 1부	**서식 2**
		○ 강원 안심관광 단체 결과 보고서	**서식 3**
		○ 숙박확인서	**서식 4**
		○ 단체관광 일정표	자체양식
		○ 단체관광 참석자 명단	자체양식
		○ 코로나 검사비 관련 영수증 ※ 반드시 원본 제출 - 사업자의 '법인명의'로 발급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법인카드 영수증 -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지출대상 업체로의 이체 내역서(입금증)	원본
		○ 개인정보 수집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1부	**서식 5**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원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 '원본대조필'과 함께 법인인감을 날인 제출
※ 강원도 1박 상품 : 강원 안심관광 단체 지원 신청서만 제출
- 코로나 검사 지원절차만 지원 예정

4. 안내사항

□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관련 기본입국 프로세스 (한국관광공사 방한관광재개 안내자료 참조)

○ **(입국 전)** PCR검사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K-ETA(전자여행허가) 신청서,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

○ **(입국 후)** ❶검역 → ❷출입국 심사 → ❸PCR검사 및 격리해제 → ❹체류

❶검역: Q-code에서 발급받은 QR코드 제시

※ QR코드 없을 경우 백신접종증명서, PCR음성확인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❷출입국심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Q-Code이용자 제출 불요)

❸PCR검사(입국 1일) 음성 확인 : 총284개소 검사전문기관 및 의료기관(질병청 공고 144호)

○ 귀국시 국가별 격리현황 자료(22.4.1. 기준)

국가구분 *KTO해외지사 소재국		2019 방한규모(명)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접종완료 방한 외래객 귀국시 격리현황
			대상국	재개현황	
중화권 일본 (4)	중국	6,023,021	-	-	**14일시설 +7일 시설·자가**
	일본	3,271,706	○	×	3일 시설 + 4일 자가
	대만	1,260,493	○	×	10일 자가격리
	홍콩	694,934	○	×	14일 시설격리
동남아 중동 (11)	태국	571,610,	○	○(4.1)~	1일차 PCR(지정호텔)
	베트남	553,731		-	-
	필리핀	503,867		-	-
	말레이시아	408,590	○	○(4.1)~	-
	인도네시아	278,575		-	1일차 PCR(지정호텔)
	싱가포르	246,142	○	○	
	인도	143,369		-	-
	몽골	113,599		-	-
	카자흐스탄	52,966	○	○(4.1)~	-
	터키	31,293	○	○(4.1)~	-
	UAE	13,226	○	○(4.1)~	-
미주 (2)	미국	1,044,038	○	○	-
	캐나다	205,408	○	○(4.1)~	-
유럽 (4)	러시아	343,057	○	○(4.1)~	-
	영국	143,676	○	○	-
	독일	120,730	○	○	-
	프랑스	110,794	○	○	-
대양주 (1)	호주	173,218	○	○(4.1)~	1일차 PCR/RAT(자택대기)

※ 상기 자료는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 및 유의사항

○ **지원예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주관, 후원하는 행사 참가자
-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 여행사 관계자(직원, 가이드, 운전기사 등) ※ 단, 해외송객사의 인솔자(투어리더)는 가능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완전 배제
- 행사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강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지원금 삭감, 취소, 반환 조건**

- 모객정보 허위기재 시 지원금 결정 또는 지급 되었을 경우
- 지원여부 통보 후 또는 기 지급된 경우라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지원금 신청서류 및 결과보고 제출 서류 미비 시

○ **주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입국 및 방역정책에 따라 '강원도 안심관광 G-Safe Travels' 지원사항 및 절차 변경가능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가능(공고 게시처에 별도 안내 예정)

○ **관련사항**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 **문 의 처**

- 강원도관광재단 해외마케팅팀 033-269-8940 / shlim@gwto.or.kr
- 대한결핵협회 운영지원부 033-254-2056 / knta0505@hanmail.net

[서식 1] 강원 안심관광 단체 지원 신청서 (사전 신청)

강원 안심관광 단체 지원 신청서

1. 여행사 정보

여행사명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직위) (성명)	**담당자 연락처**	

2. 상품개요

상품명 (국문)		**상품명 (국문)**	
송객(현지) 여행사		**상품가격 (한화 기준)**	
방한 기간	월 일 ~ 월 일 (_____박)	**도내 체류기간**	월 일 ~ 월 일 (_____박)
코로나 검사방법	□ PCR 검사 □ 신속항원검사(RAT) □ 기타(_____) * 해당 내용에 V 혹은 ■ 표시		
검체 체취 장소	**OO보건소**	**검체 체취 일자**	월 일

인원	**계**	**국가명**						

상기와 같이 강원 안심관광 단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

여행사명

대 표 자 (인)

(재) 강원도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2] 강원 안심관광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청구서

강원 안심관광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청구서

1. 여행사 정보

여행사명		**대표자**	
여행사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담당자	(직위) (성명)	**담당자 연락처**	

2. 청구금액

금 액	금 원(금 원)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상기와 같이 강원 안심관광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22 . .

여행사명

대 표 자 (인)

(재) 강원도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3] 강원 안심관광 단체 결과 보고서

강원 안심관광 단체 결과 보고서

1. 방문 단체 개요

입국일		**이용 항공편**	
송객(현지) 여행사명		**송객(현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접객(국내) 여행사명		**접객(국내)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상품명		**모객인원**	

2. 방한기간 단체관광객 이상 유무(예시)

일 자	방문지역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여부	비고
	입국	*특이사항 없음*	
	서울, 경기	*특이사항 없음*	*검사결과 음성*
	강원	*특이사항 없음*	
	강원	*특이사항 없음*	
	강원	*△△△ 기침*	*검사결과 음성*
	서울	*특이사항 없음*	
	출국	*특이사항 없음*	

3. 사진자료(차량 내 방역물품 비치 증빙자료)

손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등 기타 방역물품

※ 상기내용을 포함한 여행사 자체 양식 활용 결과보고서 제출 가능

[서식 4] 숙박 확인서

강원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숙박 확인서

1. 여행사 정보

여행사명		**대표자**	
여행사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담당자	(직위) (성명)	**담당자 연락처**	

2. 숙박내용

숙박기간	**국 적**	**숙박 인원(명)**			**비 고**
		계	**관광객**	**여행사 관계자**	

상기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확 인 자 숙박업소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붙임 : 숙박영수증 사본 1부. 끝.

(재) 강원도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마케팅 활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수집 항목

강원 안심관광(해외 단체관광상품) 인센티브 신청 진행 및 향후 관련 조사 시 활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① 지원금 신청 필수항목
신청여행사 담당자 성명, 직함, 전화, 핸드폰, 이메일, 신청금액, 계좌 관련 정보 등

② 모객 명단 제출
참가자 성명, 국적, 소속기관, 이메일, 여권번호, 단체사진 등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①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유하며, 이용기간이 경과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성명, 이메일, 개인식별번호, 계좌번호 등 지출 관련 기록으로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3년간 보관

②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3. 마케팅 활용 안내

① 본 행사의 추진실적과 행사내용, 참가자의 행사 참가 사진은 추후 홍보 목적 보도자료,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② 해외 매체에 본 행사의 사례 자료가 게재될 경우, 담당자가 사전 협조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4.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개인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 및 마케팅 활용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붙임 1 코로나19 검체검사 위탁 계약서

코로나-19검사 위탁계약서

OOO여행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한국을 방문하는 당사 고객(여행객)이 여행 복귀 전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한결핵협회(이하 ‘을’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요청한 당사의 고객인 여행객 대상 코로나-19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수료란 코로나-19검사 및 결과 통보 실시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당사 여행객(고객)에 대한 코로나-19검사를 의뢰하며, 을은 코로나-19검사를 실시 후 을에게 해당 검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검사단가) 코로나-19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의 단가는 을이 정하는 금액 한화 70,000원(VAT 포함)으로 한다.

제6조(검사실시 및 결과 통보기한) 갑은 을에게 전자우편 방식으로 방문 5일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하고, 을은 검사 의뢰를 받은 날의 그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검사 완료 후 갑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청구 및 지급방법) 갑이 을에게 의뢰한 코로나-19검사에 대해 을이 수수료를 청구하게 되면 갑은 해당 청구일로부터 즉시 을에게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입금확인 후 을은 영문결과서를 제공한다. 이때에 검사 결과 통보방식은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전자우편의 해당 주소로 검사결과를 회신한다.

제8조(비밀보장) ① 본 계약에 따라 갑과 을 모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것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중도해지 포함)에도 계속된다.

②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 당사자가 모든 문제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때
2. 상호간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3. 갑이 기타의 이유로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할 때

제10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계약서의 제반 규정에 대하여 갑과 을간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이 계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고, 당사자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7
기 관 :	상 호 : (사)대한결핵협회
대 표 자 :	대 표 자 : 신 민 석 (인)

붙임 2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여행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대한결핵협회(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대한결핵협회"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코로나19검사 용역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코로나19검사 및 통보를 위한 이름, 성별, 생년월일, 코로나19검사 결과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2년 12 월 31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 .

위탁자
주 소 :
기 관 :
대 표 자 :

수탁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7
상 호 : (사)대한결핵협회
대 표 자 : 신 민 석 (인)

붙임 3 외국인 관광객 의뢰 신청서 (대한결핵협회 제출용)

외국인 관광객 코로나-19 검체 의뢰 신청서

여 행 사 :	0000 여행사(상호)	대 표 자 :	홍길동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7
고유번호 :	000-00-00000	청구업무연락처 :	02-123-4567	비용청구 수신용 e메일	abcdef@gmail.com
검사의뢰일	2021. 12. 16	비상연락망 : (인솔자)	010-0000-0000	검사결과 수신용 e메일	ghijkl@naver.com

순번	검체채취 장소	영문이름(여권)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Sex	여권번호/ Passpoort No	방문예정일	방문예정시간	강원도 숙박일	비 고
1	평창군	KIM SEO JIN	00000000	M	M12345678	2021-01-01	pm 00:00	3박	
2									
3									
4									
5									

※ 발송주소 : rlatjwls7@daum.net

※ 의뢰신청서는 검사비 청구 증빙용으로 활용

0000여 행 사 (상 호)

※ 유사시 긴급 연락처(운영지원부 이기춘 부장 033-254-2056)

붙임 4 영문결과서 양식(안)

Corona-19 Test Report

Laboratory Name	Rapid diagnositic center for future infectious diseases	Laboratory code	11000029		
Requesting Hospital name			Clinic code		
Name		Date of Birth		Sex	
Specimen Collection date		Test date			
Registration number		Registration date			
Hospital Patient registration number		Clinicain		Department of Medicine	
Specimen type	**Upper respiratory tract swab(Nasopharngeal swab,Oropharyngeal swab)**	Lab No.	**P332091**	PASSPORT number	**GK996224**

1. RealTimePCR test **[누658라, D658404A]**

[Negative](E, RdRp gene)

Two types of specimens for the diagnosis of Corona-19 (COVID-19) should be collected: upper respiratory tract (required) and lower respiratory tract (optional).
There' s a possibility of false negatives depending on the type of specimen and timing of collecting specimen. Therefore Negative results can' t reliably eliminate Corona-19 infections.
Please interpretate considering the epidemiology and clinical symptom, and Please follow-up test if necessary.
(KCDC, Corona-19 Guideline, ver.9-4)

Phone : +82-43-249-4927

TechnologistLicense No. : No.60208 / Technologist: Ah-Ran Jo

Medical Specialist License No. : No.234 / Medical Specialist Whi-Jun Kim

Director : Cheon-Tae Kim Signature :

Date of report : **Oct 29th 2021**

The Korean Institute of Tuberculosis

KoreanInstitutepfTuberculosis,162-5,Osongsaengmyeong4-ro,Osong-eup,Heungdeok-gu,
Cheongju-si,Chungcheongbuk-do,363-954,RepublicofKorea
(This laboratory has been certified as excellent laboratory by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Laboratory Medicine Foundation)